

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일상가사대리, 부부 공동피고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・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2. 이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・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

청 구 원 인

- 1. 피고 김◇◇는 아들 소외 김◈◈의 병원입원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○○. ○. ○. ○○○원을 이자는 연 12%, 변제기일은 20○○. ○. ○. ○. ○. ○ 있습니다.
- 2. 피고 김◇◇는 위 차용금 중 ○○○원은 20○○. ○. ○. 소외 김◈◈의 병원 입원비로 사용하였으며, 나머지 ○○○원은 20○○. ○. ○○. 소외 김◈◈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.
- 3. 그렇다면 위 채무관계는 일상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827조 및 제832조에 의하여 부부간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,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,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대여금 ○○○원 및 20○○. ○. ○.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차용증서

1. 갑 제2호증

가족관계증명서

1. 갑 제3호증

주민등록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2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•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,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,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·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, 부부의 사회적 지위·직업·재산·수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, 금전차용행위도 금액, 차용목적, 실제의 지출용도,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(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6877 판결).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- 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